

#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주요 준수사항



## 01 법적 자격이 있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.



- \* 1종 : 대기환경기사
- 2종 : 대기환경산업기사
- 3종 : 3년 경력 또는 환경기능사
- 4~5종 : 배출시설 종사자 등 임직원

## 02 배출[방지]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을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.



- \*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도 배출시설 운영사항을 기록해야 하며, 주말, 공휴일 등 미가동할 경우에도 기록해야 합니다.

## 03 허가[신고]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허가[신고]를 득해야 합니다.



## 05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된 경우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- \* 최초 선임된 경우 1년 이내 교육 이수, 3년마다 재교육



## 06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활성탄 등의 교체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.



- \* 교체주기 철저 준수 및 이상여부 수시 점검

## 07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대기오염방지시설은 항상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.

## 08 배출[방지]시설에서 자가측정 후 결과를 보관해야 하며, 반기별로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대기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사업장도 자가측정을 해야 합니다.

- \* 상반기 측정결과 : 7.1~7.31.  
하반기 측정결과 : 내년 1.1~1.31.

## 09 허가[신고]받은 배출시설 설치 후 가동 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득하고 가동하시기 바랍니다.



## 10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(1종~5종) 및 1종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


##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(방지시설) 운영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원하실 경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(031-336-1438),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(031-492-8456) 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#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주요 준수사항



01

법적 자격이 있는 **환경기술인을 선임**하여 관리해야 합니다.



- ※ 1종 : 수질환경기사
- 2종 : 수질환경산업기사
- 3종 : 3년 경력 또는 환경기능사
- 4~5종 : 배출시설 종사자 등 임직원

02

배출[방지]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.



- ※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(위탁, 재이용, 공동처리 등)도 배출시설 운영사항을 기록해야 하며, 주말, 공휴일 등 미가동할 경우에도 기록해야 합니다.

03

허가[신고]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허가[신고]를 득해야 합니다.



04

폐수는 허가증에 명시된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.



- ※ 오염물질을 미처리하여 배출하거나,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면 안됩니다.

05

배관, 우수 맨홀 등 관련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폐수의 외부 유출이 없어야 합니다.



06

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된 경우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

- ※ 최초 선임된 경우 1년 이내 교육 이수, 3년마다 재교육

07

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 폐수를 법적 처리기준 이내로 처리 후 방류하여야 합니다.



08

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저장조에 눈금자 등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.



09

허가[신고] 받은 배출시설 설치 후 가동 전에 가동시작 신고를 득하고 가동하시기 바랍니다.



- ※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가동시작신고 면제
-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(1종~5종) 및 1종 사업장은 **환경책임보험에 가입**하여야 합니다.

11

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(방지시설) 운영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원하실 경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(031-336-1438),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(031-492-8456) 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